

중재 판정 사례 ④

자료제공 / 대한상시중재원

1.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구분	내용	비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품목	골프연습장 공사	
신청금액	45,624,154원	중재비용: 1,507,798원
신청일	2003. 8. 12.	
판정일	2003. 12. 24.	
처리기간	134일	
판정금액	15,000,000원	

① 사건개요

A는 B와 2003. 4. 8. 골프연습장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기간 내 선행공정(건축주 직영공사로 파일공사, 데크공사) 등의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및 설계변경으

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실비정산을 요청하였다.

A는 B가 요청에 응하지 않고 2003. 7. 12. 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자 A와 협의 없이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B는 A의 과실로 공사대금 산정이 소액으로 체결되어 공사 계약금액으로는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이는 A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며, 공사금액은 기성금액보다 과다지급 되었고, A에 대여해 준 금액까지 기성 공사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A가 산정한 공사금액은 그 객관성이 없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금액증액은 인정하나, 계약내용부분에서 공사금액증액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시중재원 중재판정부는 투입공사비에 대하여 공사계약이 중도해지 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는 실 소요경비가 아니라 목적물의 공사진행에 따른 기성금액으로 판단하여 실 공사비가 금 810,624,544원이 투입되었으나 금 780,000,000원만 인정하였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의 공사계약해지는 A와 B의 묵시적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A에 대여해 준 금액은 지급형식이 차용금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비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2. 시공하자 등으로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청구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시공하자 등으로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청구	
품 목	실내인테리어 공사	
신청금액	7,300,000원	중재비용: 160,600원
신청일	2003. 7. 1.	
판정일	2003. 8. 5.	
처리기간	36일	
판정금액	5,000,000원	

① 사건개요

A와 B는 2003. 1. 22. B의 빵집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금 25,000,000원, 공사기간 2003. 1. 24.부터 2003. 2. 15.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2003. 2. 10. 경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는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잔대금 7,300,000원을 A에게 지급하지 않아 당사자간에 해결이 되지 않자 A가 중재신청을 한 사건이다.

A는 위의 사실을 기초로 A에게 잔대금 7,300,000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B는 진열장의 규격 및 재질 불량, 내부조명 불량, 바닥타일의 재질 불량 등 시공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상당한 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B가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이나 시공과정 중에 A에게 구체적인 도급공사의 재질 및 시공 기준에 대하여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B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시공 하자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A가 B의 수차례에 걸친 하자 보완 요구에 대하여 뺑 작업대 등의 보완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공사 현장에 미숙련된 인부를 파견하는 등 A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감안하여 B가 A에게 공사잔대금으로 5,000,000원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판정 하였다.

3.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구 분	내 용	비 고
신청인	A	
피신청인	B	
청구원인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비 청구	
품 목	아파트 신축공사	
신청금액	971,324,367원	중재비용: 10,022,284원
신청일	2003. 4. 23.	
판정일	2003. 12. 22.	
처리기간	239일	
판정금액	234,279,913원	

① 사건개요

A는 2000년 5월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제1차년도 공사를 공사대금 2,336,000,000원, 공사기간은 같은 해 5. 23.부터 동년 12. 31. 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위 공사를 12. 31. 완성하고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제1차 계약의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또한 A는 2001. 11. 13. 2차 계약상의 공사를 완료하고 2002. 1. 4. 까지 2차 계약의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나, A는 그 무렵을 전후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이자, 부가가치세 등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B에게 이의를 보류하였다. 이후 B는 2002. 12. 17. A가 요구한 2차 계약에 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중 114,528,000원을 A에게 송금하였다.

A는 B가 제공한 이 사건 공사의 물량내역서에 타워크레인 사용료, 임시동력설치비, 호이스트장비 사용료 등의 비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A가 위 장비들을 임차하고 임시 동력을 설치하여 시용하는데 들어간 추가비용 금 116,273,548원을 B가 추가공사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A는 B가 작성한 내

역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요구하는 품질관리비가 누락되어 있고, A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금 2,340,000원의 품질관리비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A는 옹벽추가공사비와 공사기성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

이에 대해 B는 A가 주장하는 설계변경은 시공자인 A의 공사편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고,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설계서에 없는 공종을 A가 임의대로 시공하였으므로 추가공사비의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② 판정결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우선 고층건물에서 타워크레인 사용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워크레인 사용료를 인정하였고, 원설계 내역서 상 미계상된 품질관리비도 B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샤워부스비와 옹벽추가공사비도 발생원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도 일부 이유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



존경과 조롱 사이 - 오마주와 패러디

오마주(hommage)는 프랑스 어로 '존경, 경의'를 뜻하는 말로, 영화에서는 보통 후배 영화인이 선배 영화인의 재능이나 업적을 기리면서 감명 깊은 대사나 장면을 본떠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테면 「지구를 지켜라」의 장준환 감독은 스스로가 밝힌 대로 병구의 캐릭터에서는 「미저리」의 여주인공 캐시 베이츠를, 병구의 집 안을 묘사하는 장면은 「양들의 침묵」을, 병구의 연인 순이는 「길」의 젤소미나를 인용했다.

오마주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영화의 아주 유명한 감독에게 바치는 존경의 뜻으로 넣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다면 '패러디(parody)'는 무엇일까.

패러디의 본래의 정의는 '원본을 조롱하는 모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원본의 양식적 고유성을 이용해 그들의 특이성과 기벽성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오마주와 패러디와 구별되는 '표절'은 무엇일까.

오마주와 패러디는 '누구의 어느 작품에서 따왔다.'는 것이 명확하고 또 만든 사람 스스로도 그것을 밝히지만, 표절은 한 장면이나 내용을 슬쩍 차용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절을 해 놓고 '이것은 오마주다! 이렇게 외치는 일은 한 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 '지금은 겨울입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상식지존 뇌를 깨워라」 중에서